

가정양육수당 추진경위

- 2009. 7. : 양육지원 개시(차상위 이하 24개월 미만, 월10만원)
- 2011. 1. : 연령 및 금액 확대(차상위 이하 36개월 미만, 월10~20만원)
- 2012. 1. : 장애아동 양육수당 신설(등록장애아동 취학전 만5세 이하, 월10~20만원)
- 2013. 3 : 소득기준 및 연령 확대(소득무관 취학전 만5세이하, 월10~20만원)

※ 만5세이하 무상양육 추진경위

- 11.12. : 만0~2세 무상보육예산 증액(국회의결)
 - 0~4세 소득하위 70%, 5세 전계층(누리과정 도입)
 - 0~2세 전계층, 3~4세 소득하위 70%, 5세 전계층(누리과정 도입)
- 12. 1. : 국고보조금 확정내시(국비 280억원 증액)
- 12. 1.18 :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발표(12년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)
 - 만3~4세 누리과정 도입 : 0~2세 전계층, 3~4세 소득하위 70%, 5세 전계층(누리과정)
 - 0~5세 전계층(3~5세 누리과정)
 - 0~2세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: 최저생계비 120% → 소득하위 70%
- 12. 1. ~ 7. : 영유아보육료 국비지원 확대 건의
(시도지사협의회,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과 공조)
- 12. 9.13. : 보육료 부족분 및 취득세 감면대책 발표
(국무총리 주재, 중앙부처 및 시도지사 대표 간담회)
 - 국회의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:
지방부담(총 3,788억원 중 1,500억원 정부부담)
 - 신규취원에 따른 추가 소요분 : 정부부담(2,851억원)
- 12. 9.25. :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전면개편 추진 발표(보건복지부)
 - 보육료 지원체계 개선

- ▷ 0~2세 전계층(민간보육시설 영아기본보조금), 3~4세 소득하위 70%, 5세 전계층
→ 0~2세 전계층(소득하위 70%이하 양육보조금), 3~5세 전계층(누리과정)
- 양육수당(양육보조금) 확대
 - ▷ 0~2세 차상위 이하,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
→ 0~5세 소득하위 70%이하, 0~2세 전부, 3~5세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
- 12. 10. :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(보건복지부)
- 12. 12. : 만0~2세 무상보육 및 만0~5세 무상양육예산 증액(국회의결)